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검 토 보 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수립·시행 등의 사항 규정〉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61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배경 및 입법취지	3
2. 제정안의 체계	7
3. 제정안의 검토	9
가. 목적(안 제1조)	9
나. 정의(안 제2조)	10
다.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13
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5조) ..	14
마.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안 제6조)	16
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안 제7조)	20
사. 직원숙소 지원 및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제9조)	22
아. 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안 제10조)	26
자. 종합의견	2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5. 11. 12.
3. 회 부 일: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이들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이나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직무피로감과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실정임.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배경 및 입법취지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환경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을 위한 계호, 교정교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및 폭력·위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수용정원	수용인원 ¹⁾	수용률(%)
2021	48,980	52,368	106.9%
2022	48,990	51,117	104.3%
2023	49,922	56,577	113.3%
2024	50,250	61,366	122.1%
2025	50,614	63,680	125.8%

자료: 2025 교정통계연보

특히,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이 2020년 110.8%에서 2025년 125.8%까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등 각종 교정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1)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일 수용인원의 합) ÷ (각 연도의 일수)에 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을 의미

[최근 5년 간 교정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도주	도주 미수	병사	자살	자살방지 (자살미수)	화재	폭행치사 상 등 수용자간 폭행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기타
2021	1,278 (100%)	-	3 (0.2%)	34 (2.7%)	10 (0.8%)	132 (10.3%)	1 (0.1%)	598 (46.8%)	111 (8.7%)	389 (30.4%)
2022	1,527 (100%)	-	4 (0.3%)	45 (2.9%)	8 (0.5%)	102 (6.7%)	4 (0.3%)	789 (51.7%)	109 (7.1%)	466 (30.5%)
2023	1,795 (100%)	1 (0.1%)	2 (0.1%)	49 (2.7%)	9 (0.5%)	84 (4.7%)	1 (0.1%)	895 (49.9%)	190 (10.6%)	564 (31.4%)
2024	1,873 (100%)	-	2 (0.1%)	53 (2.8%)	10 (0.5%)	112 (6.0%)	5 (0.3%)	981 (52.4%)	186 (9.9%)	524 (28.0%)
2025	1,630 (100%)	-	-	64 (3.9%)	6 (0.4%)	113 (6.9%)	8 (0.5%)	731 (44.8%)	104 (6.4%)	604 (37.1%)

주: 기타는 수용자간 성범죄, 금지물품 소지·반입, 공용물손괴 등

자료: 법무부

법무부가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7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교정공무원의 가장 높은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²⁾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세부항목]

요 인	요인별 가장 스트레스 높은 세부항목 응답 순위 및 비율	
수용자 관리	1위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5%)
	2위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관련 협박 포함)(19.9%)
	3위	거칠고 난폭한 수용자 관리(17.5%)
	4위	수용자 심부름꾼처럼 등 느껴지는 업무(15.9%)
	5위	비일관적인 수용자 관리 원칙(9.1%)
물리적 근무환경 및 일정	1위	폐쇄된 근무환경(28.0%)
	2위	예기치 못한 근무장소나 배치 등의 변동(24.9%)
	3위	폭언, 폭력, 협박 등에서 상시 노출되는 환경(20.1%)
	4위	근무 스케줄(야간근무, 공휴일 근무 등)(17.0%)
	5위	외부와의 연락두절(10.0%)
업무관련 스트레스	1위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부족(50.1%)
	2위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 모호(20.2%)
	3위	업무 특성과 개인 성향 간 불일치(13.4%)
	4위	공정하지 못한 근무 평가 및 인사 처리(8.7%)
	5위	일과 삶의 불균형(7.6%)
조직문화	1위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31.8%)
	2위	자기생각이나 방식만 고집하는 팀장/팀원(21.4%)
	3위	타 팀(부서) 간 업무 협조의 어려움(18.8%)
	4위	조직에 대한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16.0%)
	5위	팀장/팀원과의 문화적인 세대 차이(12.2%)

자료: 법무부

교정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일부 유사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에 근거하여 경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이 이

2)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대상 실시('24.9.23. ~ '24.10.20.)

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직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안전
· 복지 관련 입법례는 없음.

이에, 제정안은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주거안정 지원
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
려는 입법취지임.

2.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행정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의 목적(제1조)과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제3조)를 규정하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제5조)과 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제6조), 교정공무원의 의료지원(제7조), 직원숙소 지원(제8조),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제9조), 퇴직교정공무원의 취업 지원 등(제1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3개의 장 및 10개 조문과 3개의 부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조문체계]

장 · 부칙	조문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6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제7조(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8조(직원숙소 지원) 제9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0조(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

장 · 부칙	조문 체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3. 제정안의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행정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행정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수용자의 수용관리, 계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상 특수성에 비추어,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나.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교정공무원(제1호), 교정공무원 가족(제2호), 복지시설(제3호), 체육시설(제4호)에 대하여 정의함.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소속되어 교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정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교정공무원의 배우자 나. 교정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정시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교정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라.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교정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용어 정의는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바,

“교정공무원”·“교정공무원 가족”·“복지시설”·“체육시설”은 이하 제정안 조문의 주요 용어로서, 정책 대상 및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교정공무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에 소속되어 교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해당 공무원의 소속을 의미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제외하면 “교정공무원”은 “교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해되어 “교정행정”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³⁾ 및 「소방기본법」⁴⁾에서 경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4)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 6. (생략)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협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찰·소방공무원의 임무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은 교정행정의 구체적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⁵⁾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⁶⁾에서 간접적으로 규정함.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정안의 수혜대상인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교정행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은 “교도관”을 정의하면서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⁷⁾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 5. (생략)

5)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경찰·소방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나, 교정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행정”직군-“교정”직렬-“교정”직류의 공무원임(공무원 임용령 [별표1])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7)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다.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라.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마. 수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지 지원

바.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사.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경계(警戒) 및 운영·관리

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2. “교정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도관”이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

4. “보건위생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약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

5. ~ 8. (생략)

다.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제정안은 교정공무원이 재직 중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시책 수립·시행, 건강장애의 예방·치료,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의 책무규정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이라는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선언하는 취지인바, 「경찰복지법」, 「소방공무원복지법」의 유사입법례⁸⁾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다만,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으로, 제정안 제3조는 각 항에서 국가 외에 다른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 제목 “국가 등의 책무”를 “국가의 책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안 제5조)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 정 안
제5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제6조에 따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

한다.

②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항

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교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정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정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이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체계 구축 및 단계적·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의 제목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전단은 기본계획의 “수립” 대신

“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과 본문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5항은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안 제6항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행정입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안 제6조)

제정안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제 정 안
제6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본다.
- ⑧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전문가와 행정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보다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입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경찰복지법」 및 「소방공무원복지법」도 각각 경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령·제도 개선, 예산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⁹⁾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¹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 제6조제4항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예산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2026. 3. 31. 기준 법무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22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수		
			계	당연	위촉
1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0	21	9
2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	9	1	8
3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7	2	5
4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	4	5
5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7	4	3
6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30	8	22
7	난민위원회	난민법	15	6	9
8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7	2	5
9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 기금법	15	7	8
10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17	10	7
11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	-	-
12	법무자문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규정	-	-	-
13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15	5	10
14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9	3	6
15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6	3	3
16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54	42	12
17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9	4	5
18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9	2	7
19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3	-
20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10	5	5
21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법	8	3	5
22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7	-	7

자료: 법무부

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안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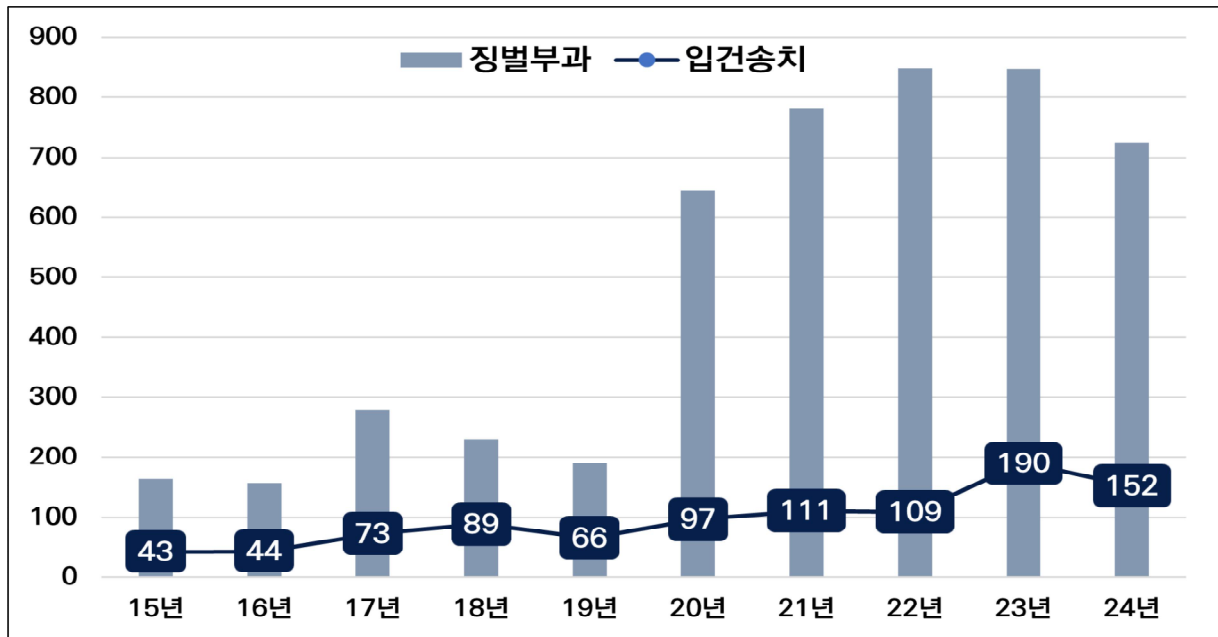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시기·주기, 진료의 대상·방법·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 난동 등 교정사고와 수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을 경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정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25. 11. 20.)

[교정공무원 피고소·피고발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연도	피소 인원	진행 중	결 과 (피소 인원 기준)							
			계	무형의	죄안됨	기소 유예	기소	공소권 없음	각하	기타
2020	1,694	-	1,694 (100%)	310 (18.3%)	1 (0.1%)	-	3 (0.2%)	10 (0.6%)	1,277 (75.4%)	93 (5.5%)
2021	1,530	29	1,501 (100%)	221 (14.7%)	11 (0.7%)	2 (0.1%)	-	5 (0.3%)	1,154 (76.9%)	108 (7.2%)
2022	1,537	77	1,460 (100%)	300 (20.5%)	1 (0.1%)	-	1 (0.1%)	9 (0.6%)	1,095 (75.0%)	54 (3.7%)
2023	1,385	72	1,313 (100%)	364 (27.7%)	2 (0.2%)	-	-	6 (0.5%)	899 (68.5%)	42 (3.2%)
2024	1,241	214	1,027 (100%)	221 (21.5%)	2 (0.2%)	-	-	17 (1.7%)	719 (70.0%)	68 (6.6%)
계	7,387	392	6,995 (100%)	1,416 (20.2%)	17 (0.2%)	2 (0.0%)	4 (0.0%)	47 (0.7%)	5,144 (73.55)	365 (5.2%)

자료: 법무부

한편, 안 제7조제2항은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의미¹¹⁾)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훈령)에서는 ‘경찰·소방’에 대한 의료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의료지원 대상의 확대는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경찰병원의 예산 및 진료수요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 제정 추진 시 의료지원 대상이 될 집단의 규모(인원, 예산 등)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 직원숙소 지원 및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안 제8조·제9조)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8조(직원숙소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

11)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공무원과 교정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정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교정시설과 근접한 곳에 머물면서 화재·도주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교정시설은 24시간 계호업무가 계속되는 곳으로 주로 도시 외곽지역 또는 격오지에 위치하고, 교정공무원은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법무부훈령)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을 순환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다수의 교정공무원이 비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임.

비상대기숙소(관사)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교정시설 근무 교정공무원 16,778명 중에 비상대기숙소를 배정받은 교정공무원은 3,415명으

로, 숙소 배정비율은 약 20.3%에 불과함.

[비상대기숙소 배정 현황]

2026. 2. 기준

직원 수	지원세대 수	배정율(%)
16,778명	3,415세대	20.3

자료: 법무부

안 제8조는 이러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비연고지에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직원숙소 지원을 위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찰복지법」의 경우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비연고지 근무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한편, 안 제9조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체력 유지 등을 위한 체육시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1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찰공무원 가족의 수 및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한다.

두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음.

다만, 해당 조문의 취지상, 도시 외곽이나 격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교정시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부 보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안 제9조 단서는 외부 시설 이용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을 “체육시설”에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복지법」의 경우 외부 시설 이용 비용의 지원 대상 시설을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로 규정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

또한,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의 “복지시설, 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반복하여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제1항의 “복지시설, 체육시설”을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로 약칭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해당 용어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복지법」도,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복지시설등”으로 약칭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¹⁴⁾을 참고할 수 있

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이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것으로 보임.

아. 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안 제10조)

제정안은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 퇴직교정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담·교육 등 취업 및 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안
제10조(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정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정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경험을 살려 이직할 곳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할 경우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임.

제정안과 같이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창업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퇴직 후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일응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교정공무원과 업무 특성이 일부 유사한 법무부 내 타 직렬인 보호직렬, 출입국관리 직렬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근무를 일정 부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해당 직렬과의 형평성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복지법」¹⁵⁾과 「소방공무원복지법」¹⁶⁾은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퇴직공무원 취업 등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며, 「군인복지기본

15)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경찰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법」 17)은 군인을 위한 노후설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기타 직렬 공무원에 대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자. 종합의견

제정안은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무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강제하면서 의료·직원숙소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나, 대부분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인 관계로 임의조항 형식을 취하고 있음.¹⁸⁾

또한, 유사 입법례인 「경찰복지법」 및 「소방공무원복지법」과 비교하여 보면,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2개 법률의 공통적인 사항 정도만 열거하고 있는 관계로 입법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참고로, 「경찰복지법」은 주기적인 현황조사, 특수건강진단 실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용역 등의 간소화, 수도권 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17) 「군인복지기본법」 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인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회답일: 2026. 1. 8.)에 따르면,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659만원, 2032년 1,575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3,959만원(연평균 2,792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있음.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안전관리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소방업무환경측정, 소방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소방보건의 채용,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문 의
02-6788-5053